

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1556
----------	------

2020년 6월 30일
보건복지위원회

I. 심사경과

-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0년 5월 25일 이영실 의원외 13명
- 회부일자 : 2020년 5월 29일
- 상정일자 : 제295회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

【2020년 6월 16일 상정·의결(원안 가결)】

II. 제안설명의 요지 (이영실 의원)

1. 제안이유

- 현행조례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, 이에 따라 한부모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이 부족한 실정임.
- 이에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구체화하여 시장사무를 명확히 하고, 한부모가족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여 한부모가족에

대한 시민인식을 높이고, 비밀유지 의무를 통해 이들에 대한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자 제안함.

2. 주요내용

- 한부모가족의 지원사업을 일부 변경 및 추가 신설함(안 제6조)
- 한부모가족의 날의 취지에 맞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9조의2)
- 비밀 유지의 의무를 규정함(안 제16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
- 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 참조

III. 검토보고의 요지 (수석전문위원 이문성)

1 조례안의 개요

- 2010년 이후 서울시의 한부모가족비율 총구수 기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, 이 중 저소득한부모의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임.

〈연도별 한부모가족 현황〉

(단위 : 가구, %)

구분	연도	총가구수(A)	한부모가족(B)	비율(B/A)	*저소득한부모(C)	비율(C/B)
전국	2018	20,499,543	1,539,362	7.5%	209,389	13.6%
	2017	20,167,922	1,533,166	7.6%	222,136	14.5%
	2015	19,560,603	2,060,162	10.5%	223,574	10.9%
	2010	17,574,067	1,594,138	9.0%	-	
서울	2018	3,981,741	306,902	7.7%	34,824	11.3%
	2017	3,984,850	309,868	7.8%	36,178	11.7%
	2015	3,784,490	411,465	10.8%	39,912	9.7%
	2010	3,577,497	351,848	9.8%	32,079	9.1%

※ 출처 : 「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」, 사회보장정보시스템(행복e음) 저소득 한부모 지원현황

* 저소득한부모(C) :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 +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지원 대상자 중 한부모가족; 시스템상 2012년부터 조회가능(서울시 2010년 이전은 자체 보유 자료에 근거)

- 이에 동 조례안은 취약한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·강화하고, 동시에 한부모가족들의 사기진작 및 시민 인식을 개선을 위한 기념일 지원과 낙인효과 등 사회적 차별로부터 최소한의 안전망을 마련하기 위한 비밀 유지 의무를 신설하려는 것임.

2 주요사항 검토

□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 확대 (안 제6조)

- 개정안에서는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을 확대·강화하기 위하여, 기추진 사업 및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 등을 조례에 반영하여 지원하려는 것임.
 - 안제6조제5호의 ‘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’은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17조의2¹⁾에서 시장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사항이며, 같은조 제6호의 ‘미혼모·부 가족의 자립정착 및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업’ 및 제7호의 ‘한부모가족의 일·생활 균형을 위한 가사지원서비스’는 기추진 중인 사업임.

-
- 1)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17조의2(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지원)
 -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 한부모의 선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.
 1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학적 유지를 위한 지원 및 교육비 지원 또는 검정고시 지원
 2. 「평생교육법」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교육비 지원
 3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8조에 따른 교육 지원
 -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 지원을 위하여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순회교육 실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14. 1. 21.>
 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과 양육의 병행을 위하여 그 자녀가 청소년 한부모가 속한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. <신설 2018. 1. 16.>
 -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8. 1. 16.>
 - [본조신설 2011. 4. 12.]

- 안 제6조제8호의 ‘위기 임신·출산·양육 지원 사업’은 임신이나 출산, 양육을 해야하는 한부모가족 중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나, 임신·출산·양육이 용이하지 않은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, 아동와 한부모를 보호 및 지원하려는 것으로,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.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지원사업) 시장은 한부모 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	제6조(지원사업) ----- ----- ----- ----.
1. ~ 4. (생 략) 5. 청소년 <u>한부모가족에 대한</u> 자립지원 사업 <u><신 설></u>	1. ~ 4. (현행과 같음) 5. ----- <u>한부모에 대한 교육</u> 및 ----- 6. <u>미혼모 · 부 가족의 자립정착</u> 및 <u>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업</u> 7. <u>한부모가족의 일·생활 균형</u> 을 위한 <u>가사지원서비스</u> 8. <u>위기 임신·출산·양육 지원</u> 사업
<u><신 설></u>	
<u><신 설></u>	
6. · 7. (생 략)	9. · 10. (현행 제6호 및 제7호와 같음)

한부모가족의 날 행사 지원 (안 제9조의2 신설)

- 개정안에서는 2018. 1. 16일 개정된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의4²⁾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 <u>제9조의2(한부모가족의 날) 시장</u> <u>은 법 제5조의4에 따른 한부모</u> <u>가족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</u> <u>등 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</u> <u>수 있다.</u> </p>

에 따라 지정된 한부모의가족의 날에 행사 등의 사업을 직접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, 이는 상위법에서 이미 시장에게 기념일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- 한편,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개정 전까지는 별도로 지정된 기념일이 없어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의 제정일인 10월 17일을 임의로 정해 행사 등을 추진해온 바, 한부모가족의 자긍심 고취 및 시민인식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임.

□ 비밀 유지 의무 (안 제16조 신설)

- 개정안에서는 한부모가족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직원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등에 대한 누

2)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5조의4(한부모가족의 날) ① 한부모가족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5월 10일을 한부모가족의 날로 한다.
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18. 1. 16.]

설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, 한부모가족이라는 낙인으로 인해 한부모가족의 구성원인 아동 등이 사회에서 차별받거나 피해를 받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으로, 위반 시에 구체적인 처벌이나 불이익에 대한 규정이 없어 다소 상징적인 규정이라 할 것이나 그 필요성은 인정된다 할 것임.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16조(비밀 유지의 의무) 한부모 가족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및 센터의 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같다.</u>

3 종합 의견

- 동 개정안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·강화하고, 그들의 자긍심 고취 및 시민의식 개선과 한부모가족이라는 낙인이나 차별로부터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으로, 그 타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.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생략」

V. 토론요지 : 「없음」

VI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
VII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VIII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

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영실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1556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20년 5월 25일
발의자 : 이영실, 봉양순, 이정인,
이병도, 김화숙, 김용연,
김정태, 김기덕, 김광수,
김혜련, 서윤기, 오현정,
김소양, 김동식 의원(14명)

1. 제안이유

- 현행조례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, 이에 따라 한부모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이 부족한 실정임.
- 이에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구체화하여 시장사무를 명확히 하고, 한부모가족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여 한부모가족에 대한 시민인식을 높이고, 비밀유지 의무를 통해 이들에 대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제안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한부모가족의 지원사업을 일부 변경 및 추가 신설함(안 제6조)
- 나. 한부모가족의 날의 취지에 맞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9조의2)
- 다. 비밀 유지의 의무를 규정함(안 제16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
- 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 참조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5호 중 “한부모가족에 대한”을 “한부모에 대한 교육 및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6호를 제9호로 하며, 같은 조 제7호를 제10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6호,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미혼모·부 가족의 자립정착 및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업
7. 한부모가족의 일·생활 균형을 위한 가사지원서비스
8. 위기 임신·출산·양육 지원 사업

제9조의2 및 제1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의2(한부모가족의 날) 시장은 법 제5조의4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.

제16조(비밀 유지의 의무) 한부모가족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및 센터의 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같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(지원사업)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1. ~ 4. (생 략)</p> <p>5. 청소년 <u>한부모가족에 대한</u> 자립 지원 사업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6조(지원사업)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----- <u>한부모에 대한 교육 및</u></p> <p>-----</p> <p>6. <u>미혼모 · 부 가족의 자립정착 및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업</u></p> <p>7. <u>한부모가족의 일·생활 균형을 위한 가사지원서비스</u></p> <p>8. <u>위기 임신·출산·양육 지원 사업</u></p> <p>9. · 10. (현행 제6호 및 제7호와 같음)</p>
<p><u><신 설></u></p>	<p><u>제9조의2(한부모가족의 날)</u> 시장은 법 제5조의4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.</p>
<p><u><신 설></u></p>	<p><u>제16조(비밀 유지의 의무)</u> 한부모가족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및 센터의 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같다.</p>

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제6조(지원사업) 제8호를 신설함에 따라 위기 임신·출산·양육 지원 사업을 위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위기대상 및 임신·출산·양육 각 사업의 지원방식 등이 명시되지 않아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움
 - 제6조(지원사업) 제5호의 개정 및 같은조 제6호, 제7호의 신설 및 제9조의2(한부모가족의 날) 신설과 관련해서는 서울시에서 기 추진중인 사업(붙임 참조)이 있으므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

3. 미첨부 사유

- 가. 의안이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(제3조제1항제2호)

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

담당관 남승우

정책조사팀장 여차민

주무관 채소영

☎ 02-2180-7942

e-mail : liz1998@seoul.go.kr